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79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7956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58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 선고 2020. 6.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58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2. 접수 제84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 라.항을 "라. 피고는 2019. 4. 24.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39호)에서 위 나, 다항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2019노997)에서 2020. 1.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덕수

판사하성원

판사송승용

별지